

#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538
----------	-----

제출년월일 : 1999년 7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 제정이유

근로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 한정함
- 근로활동의 운영시기는 재학생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하계와 동계방학기간으로 함
- 근로활동의 신청은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제반서류의 확인이 용이한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접수하도록 하고, 시장이 확정함
- 근로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함

##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해당없음

## 제천시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사무에 대하여 대학생·고등학생들의 근로활동(이하“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방학동안에 학비를 베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절차) ①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선발) 시장은 당해년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